

제298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정관 개정 보고

2020. 11. 30.



서울시농수산물공사
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개정 보고

1. 개정 사유

○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
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2020.7.16)
-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04, 2020.7.16)
 - ▶ 정관 반영 권고사항 : 노동자이사 용어 변경(노동자이사→노동이사),
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 권한 강화

○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

-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2019.12.3) 사항 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
 - 삭제 :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- 개정취지 : 유능한 외국인 임원 채용으로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

○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변경사항 반영

- 사장 경영성과계약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6526, 2015.6.19)
 - 변경취지 : 서울시에서 경영성과 관련 종합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와
사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이사회 심의 곤란

2. 주요 개정 내용

- 노동자이사 용어 정비(제11조 제1항)

-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로 변경

- ※ 다른 사규 일괄 정비토록 정관 부칙에 반영

- 비상임이사의 권한 신설(제13조의 2)

- 비상임이사(노동자이사 포함)에 소관부서를 통한 이사회 안건 제출 및 정보 열람 요구권을 신설

-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(제14조제1항)

- 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“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”를 삭제

-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(제25조)

- 의결사항 제17호 “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사항”을 삭제

- ※ 이사회운영규정에도 의결사항 조항이 있어 정관개정에 따라 삭제토록 부칙에 반영

3. 참고 사항

- 제안 근거 : 1.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

- (조례 제7667호, 2020.7.16.공포·시행)

- 2. 지방공기업법(법률 제16664호, 2019.12.3 일부개정)

-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- 절 차 : 서울시의회 보고 → 서울시장 인가 및 공포 시행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1항 단서 중 “노동자이사”를 “노동이사”로 한다.

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 2(비상임이사의 안건 제출권 등)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제1항 1호 “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”는 삭제한다.

제25조 17호 “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”은 삭제 한다.

부 칙(2020. 11.)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사규의 개정) 공사 사규(직제규정, 인사규정시행내규,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,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)의 제명과 본문 중 “노동자이사”는 “노동이사”로 표기하고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제17호는 정관 개정 사항을 따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1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제13조의 2 < 신설 ></u></p>	<p>제11조(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노동이사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3조의 2(비상임이사의 안건 제출권 등)</u> <u>비상임이사(노동이사 포함)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이사회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건과 관련한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<u><삭 제>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

현 행	개 정
<p>제25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<u>사장과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8. ~ 20. (생략)</p>	<p>제25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<삭 제></p> <p>18. ~ 2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제41차, 2020.00.00.></p> <p>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다른 사규의 개정) 공사 사규(직제규정, 인사규정시행내규,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,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관리규정)의 제명과 본문 중 “노동자이사”는 “노동이사”로 표기하고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제17호는 정관 개정사항을 따라 삭제한다.</p>